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2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는 적출물 및 병원 세탁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
- 지방공업단지내 공장설립의 원활한 지원 및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 도모

□ 주요골자

- 적출물 처리업의 지정 및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지정에 관한 사무와
- 지방공업단지안의 시설의 설치, 용지및 시설의 매각, 임대, 유지보수 및 개량, 입주계약 등 지방공업단지 관리업무를 시군 및 도출장소에 위임하는 것임

□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(별첨)
- 의료법 (별첨)
- 의료법시행규칙 (별첨)
- 적출물등처리규칙 (별첨)
- 의료기관세탁물처리규정 (별첨)
-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(별첨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「별표」권한위임사무중 보건과 소관에 “제70호 내지 제79호”
를, 공업과 소관에 “제19호”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보건과 소관 >
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보건과	70	· 적출물처리 소각시설설치 신고	· 적출물등처리규칙 제4조
	71	· 적출물처리업자의 지정	· 적출물등처리규칙 제5조
	72	· 처리계획수립 및 처리실적서 제출	· 적출물등처리규칙 제6조
	73	· 적출물처리업자의 휴업, 재개업, 폐업, 장소이전, 명의변경 등 신고	· 적출물등처리규칙 제8조
	74	· 적출물등의 처리비용 결정	· 적출물등처리규칙 제10조
	75	· 적출물처리업자 지정의 취소	· 적출물등처리규칙 제11조
	76	·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소의 지정	·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 제5조
	77	·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비용 결정	·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 제13조
	78	·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지정의 취소	·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 제14조
	79	·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소 지도 감독	·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 제15조

< 공업과 소관 >
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공업과	1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공업단지 관리업무(청주시 제외) 가. 지방공업단지의 용도별 구획 관리 나. 지방공업단지 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의 임대가격 및 납부방법 결정 다.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 징수 및 공업단지안의 도로, 폐수처리장, 가로등 기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,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 징수 라. 지방공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및 그 변경사항의 동의 마.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장설립 완료전 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의 처분시 매수, 양도 바.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장설립완료후 공장 기타시설 처분시 동의 사. 경매 등에 의한 공단용지 취득자의 신고수리 및 입주계약 아.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단용지 용도별사용불이행시 공단용지의 환수 자. 법 제42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용지 양도에 대한 동의, 매수 차. 입주기업체를 위한 지원사업 카. 지방공업단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및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 공해관리, 환경관리등에 관한 지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조 제7호 동법 제34조 동법 제36조 제2항 동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8조 동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9조 제3항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 및 제43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